■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14.11.7.>

전산자료이용 [ ] 심사 [ ] 승인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발급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사항	이용 목적		
	근거 법령		
	자료의 범위	[ ] 기개발자료	[ ] 가공자료
		[ ] 전국 [ ] 시·도	[ ] 시·군·구
	자료제공방식		
자료 관리	보관기관		
	안전관리대책		

「건설기계관리법」 제39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제공 범위 및 방식 등 신청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자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유의사항
1. 전산자료 이용 심사신청은 자료이용 목적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2. 전산자료 이용 승인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2개 이상의 시·도에 해당하는 자료를 동시에 제공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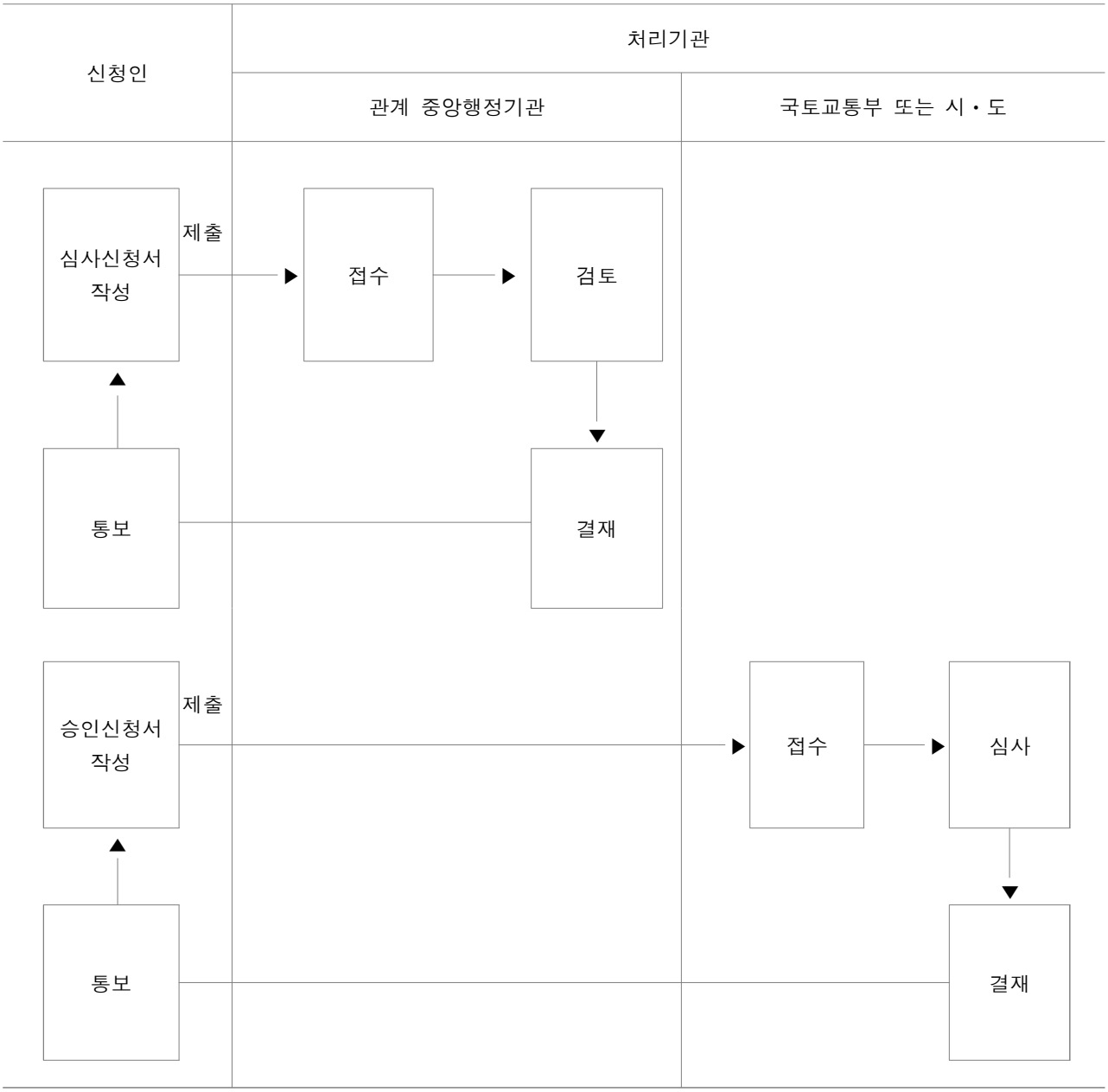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